

動 向

---

뉴미디어時代의 放送環境 및 制度의  
變化

李 鎬 圭

---



# 뉴미디어時代의 放送環境 및 制度의 變化

## — 先進國事例를 中心으로 —

### 目 次

- I. 序 論
- II. 미디어 環境의 變化
- III. 放送 理念의 再構成
- IV. 考慮되어야 할 放送制度
- V. 先進國의 動向
- VI. 結 論

### I. 序 論

情報通信의 기술발달은 정보산업 뿐만 아니라 기존의 방송분야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는 個別的이던 미디어들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發達로 인해 서로간의 結合現象이 나타남에 따라 지금까지 각 미디어에 적용하였던 規律의 正當性이 심한 排戰을 받게 되었다. 특히 방송계 뉴미디어의 출현은 방송의 특징인 '채널의 稀少性', '社會的 影響'을 무색하게 함으로서 기존의 방송개념의 재고와 더불어 규율의 正當性이 문제시 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희소성과 사회적 영향이라는 두가지의 특징을 이유로 방송에 公共性을 부여 왔으나 이제는 그러한 公共性의 존재 가치가 미약하게 되었다.

따라서 방송계 뉴미디어의 보급촉진을 목적으로 선진국들은 새로운 방송질서에 대한 논의들을 오래전부터 진행해 왔다. 즉 기존방송과의 調和를 維持하면서 방송계 뉴미디어와 기존방송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公營방송의 형태를 근간으로 하여 獨占 혹은 複占의 形態를 견지해 왔으나 이제는 자유로운 競爭體制의 形態로 새로운 방송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내년부터 실시될 전기통신공사 주도하의 CATV의 시범사업을 필두로 멀지않아 기존방송계에도 뉴미디어가 도입되어 새로운 放送秩序가 出現할 것이라는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들의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도장치의 동향을 살펴 보면서 장래의 우리나라 방송계가 직면하게 될 문제들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對處方案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 데 이 글의 目的이 있다.

### II. 미디어 環境의 變化

#### 1. 미디어의 秩序

뉴미디어가 예측과 평론의 대상이 되었던 시기에는 미디어의 秩序는 문제시되지 않았을 것이다. 수년간 뉴미디어가 비즈니스와 정책의 대상이 되어 「새로운 전기통신의 질서」라든지 「새로운 방송질서」가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장래의 미디어의 질서가 방송제도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며 이러한 影響에 대해 방송제도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일기 시작하였다. 그러면 미디어의 질서가 무엇이며 그것을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인가? 모든 미디어는 相互競爭, 共存의 상태에 있다. 예를 들면 뉴스에 있어서 신문과 라디오에 의해서도 정보입수는 가능하고, 오락정보에 있어서도 영화와 잡지로도 충족할 수 있다. 즉 미디어마다 독특한 고유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 상호공유, 경쟁의 관계에 있다 하겠다.

1960년대 경부터 라디오는 급격히 사양화의 길을 걸음에 따라 TV라는 새로운 매체로 라디오의 기능이 代置되었다. 이 경우를 생각하면 라디오와 같이 免許事業인 TV가 지니고 있는 대중의 미디어이용 에너지를

다른 새로운 미디어에게 건네 줄 수가 있다. 상기의 두 미디어는 면허를 필요로 하고 전파의 희소성으로 인해 국가에서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미디어를 육성한다손 치더라도 그 미디어들이 주된 미디어의 역할을 한다고는 보기가 어렵다. 이것은 미디어 속성상 生成, 發展, 衰退의 過程이라는 라이프사이클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청자에게도 라이프사이클이 있으므로 각 시청자들이 처해있는 라이프 사이클에서는 미디어를 지지하는 양태도 또한 변화되게 마련이다.<sup>1)</sup> 그렇다면 미디어의 라이프사이클을 결정하는 요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환언하면 대중의 미디어이용 에너지의 흡수 능력은 어디에서도 출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시청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할 수 있다. 즉 시청자들이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등의 각각의 단계에서 추구되는 미디어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것이 미디어의 라이프사이클을 決定짓는다고 볼 수 있다.

## 2. 放送環境의 變化

커뮤니케이션 산업영역은 현재 2개의 領域으로 構成되어 있다. 하나는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을 근거로 하고 있는 情報産業이고, 다른 하나는 TV의 브라운관을 중심으로 하는 뉴미디어이다. 정보산업과 뉴미디어는 둘 다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에 기초를 두고 있다.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발전으로 인해 지금까지는 제작기 독립적으로 발전되어 왔던 미디어들이 현재 서로 결합, 경쟁의 국면을 맞고 있다. 즉 정보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 방송사업, 정보처리사업간의 결합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결합현상가운데 특히 방송계 뉴미디어의 출현은 기존의 방송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면 방송계 뉴미디어의 출현은 앞으로의 방송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가? 뉴미디어는 산업측면에 있어 새로운 競爭要因을 발생시킴으로서 경쟁은 가속화되고, 종래의 질

서는 커다란 도전을 받게되어 새로운 질서의 형성을 갖 고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새로운 방송질서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상방송중심, 케이블/위성보완형(현재의 기본질서는 변하지 않고 어느 정도 케이블과 위성의 비율이 늘어난다). 둘째, 지상방송, 위성방송의 공존형(채널 수에 있어서도 프로그램 서비스면에 있어서도 위성방송이 지상방송에 견줄만큼 성장한다.) 셋째, 분배위성과 케이블이 결합한 시스템 중심형(미국과 같이 Sattelite Cable Network 이 형성 된다.)<sup>2)</sup>

여기서 제시된 3가지의 예상되는 형태의 근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의 형태를 살펴보면 위성방송과 다채널 도시형 CATV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地上放送이 중심이 되리라고 보는 이유는 각 채널에 投入되는 제작비의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 하겠다. 요컨대 위성방송과 CATV의 채널에 투입된 프로그램 비용과 제작비는 현재 지상방송의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대중의 「미디어 이용 에너지」를 충분히 지상방송과 같이 흡수를 하지 못할 것이다.

각 서비스가 어느 정도의 이용에너지를 차지할 것인가는 서비스의 질에 달려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질은 제작비, 즉 프로그램 제작비가 많은 부문을 규정한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제작비를 아껴서도 안되고 상당한 프로그램 질의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의 지상방송에 비해 매우 저조한 제작비로는 지상방송에 필적하는 대중미디어 이용에너지 吸收力을 갖는 것은 可能하지가 않다.

두번째 형태의 최대 조건은 위성방송 수신기의 형태가 個別受信이 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개별수신의 세대수가 거의 반을 차지함으로써 위성방송의 위력이 지상방송에 필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질도 매우 높아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서 대중의 미디어 이용에너지 흡수경쟁에서도 지상방송과 동등하게 된다. 두번째

1) 日本民間放送連盟編, 放送と社會, (東京: 東洋經濟新聞社, 1988) pp. 14-16.

2) 野崎茂, <メディアの熟成>, (東京: 東洋經濟新聞社, 1989) p. 12.

형태의 최대 조건이 개별수신이어야 한다는 점은 다음에서 설명될 세번째의 형태와도 관련된다. 앞으로 통신衛星 케이블시스템이 중심이 되리라 보는 것은 현재의 방송서비스에 필적하는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질적으로 그것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주목한 것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통신위성 비용이 저렴해야 하며 CATV 내지는 광대역통신망의 보급율이 높아져야 하며 다수의 프로그램 공급업자가 출현해야 한다. 이 점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미디어의 주기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인 視聽者들의 欲求를 충분히 充足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보함이 해당 미디어에 生命력을 갖게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3. 미디어간의 結合 및 競爭 現象

통신기술의 변화에 따라 독립적으로 발전되어 왔던 미디어들의 고유 영역이 애매모호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미디어질서와 그에 따른 방송환경의 예상되는 變化를 언급하였다.

미디어의 결합, 경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整理된 論議는 없지만 단지 分類學的으로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유선계 분야에 있어서 공중전기통신망과 CATV 망서비스가 경쟁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공중전기통신망과 방송서비스가 경쟁하는 경우, 즉 공중전기통신망에 의해 動畫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기존 TV 방송과의 경쟁현상이 일어난다. 셋째, 위성통신, 사설 전기통신등의 이용에 의한 공중전기통신서비스와 기존의 공중전기통신망에 의한 서비스가 경쟁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sup>3)</sup>

그러면 이러한 미디어들간의 대표적인 결합, 경쟁의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서로간의 차이점과 같은점에 대해 살펴보겠다.

#### 가. 放送과 CATV

CATV는 法律的으로 契約을 한다면 누구라도

3) 芦部信喜編, ニューメディア時代の放送制度像, (東京, 放送通信制度研究會, 1986) pp. 35~36.

CATV 서비스의 수신이 可能하므로 방송의 特性인 「公衆에 의한 直接受信을 目的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맥상통 한다. 그러나 전송시설에 있어서 방송은 無線通信의 송신인데 반해서 CATV는 유선전기통신의 송신이며, 主體에 관해서는 방송의 경우는 집중배제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에 CATV에는 그러한 주체에 관한 규제가 없다.

#### 나. 電氣通信과 放送

방송과 통신은 각기 독립적으로 발전해 온 미디어이다. 전자는 편방향 매스미디어( oneway mass media )이며 후자는 쌍방향 개인미디어( twoway personal media )이다. 즉 방송은 大衆을 상대로 하는 매체인 반면, 통신은 一對一의 미디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방송과 통신을 구별하는 기준이 이제는 통신위성의 출현으로 애매모호하게 되었다. 통신위성의 성능향상( 고출력화), 지상안테나의 수신기능의 향상등에 의해 통신위성에 의한 프로그램 전송서비스는 단순히 CATV 시스템등에 의한 공동수신만이 아니라 가정내지 개인에 의한 直接受信도 可能하게 되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사용자수파수의 차이는 있으나 통신위성에 의한 프로그램 전송과 방송위성에 의한 방송이 외견상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으나 통신위성을 통하여 제공되는 프로그램 전송서비스에 관해서는 그 규율체계가 현행 법제상에서는 충분히 정비되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통신법에 의해 통신업자의 허가를 받은 자가 통신위성을 이용, 방송의 형태를 띠게 됨에 따라 기존의 방송에 커다란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 VRS와 캡틴서비스의 경우, 화상 및 음성으로 정보가 송신되고 있고 누구라도 접속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전기통신에도 不特定多數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독립적인 영역이 이제는 서로 중복되는 경향을 띠고 있는 반면에 기존의 법률체계에서는 방송에서는 방송설비의 관리 지배자와 방송설비를 이용하는 자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통신에서는 하드와 소프트가 분리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송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지만 통신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전기통신과 방송의 결합은 기존법률의 정합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다. 廣大域을 利用한 CATV 와 通信網의 境界領域

CATV 는 시내전화망과 같이 유선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는 서비스이지만 법제상으로는 유선텔레비전방송법에 의해 규제된 방송계 서비스이다. CATV 사업과 통신사업과 관련해서 (1) CATV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한 CATV 서비스의 제공 (2) 通信事業者에 의한 CATV 서비스의 제공 (3) CATV 사업자에 의한 통신서비스의 제공으로 분류될 수 있다.

(1)은 서비스의 主體가 유선텔레비전 방송법상의 유선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이고 일부의 설비는 통신사업자의 설비를 이용하는 형태이다.

기술적으로는 광대역 케이블 네트워크와 광대역 ISDN 을 사용하여 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그것에는 제도상의 검토과제가 남아 있다.

미국의 CATV 는 일본과 같이 공중과 TV 방송의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수신시설로서 등장하여 70년대까지는 커뮤니티 안테나 텔레비전이라 불리웠다. 그 후 공중과 재송신뿐만 아니라 獨自의인 프로그램 전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케이블 텔레비전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1)의 형태 즉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한 CATV 서비스제공의 형태는 이미 '68년에 통신망이용의 제도가 확립되었다. 전화회사가 CATV 사업자를 위한 시설을 건설할 경우 통신법상의 건설허가(통신법 214조)를 필요로 한다는 규제이다.

'68년 이전의 전화회사는 CATV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자유로이 시설을 건축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60년대 후반에 FCC 는 방침을 변경, 전화회사가 건설하는 CATV 용시설을 주간(interstate)통신시설이라 간주하지 않고, 規制를 하게 되었다.

미국에 있어서는 CATV 시설의 대부분은 CATV

업자들이 소유, 관리하고 있지만 '68년에는 電話會社가 건설, 소유하는 설비를 CATV 사업용으로 임대가 가능한 제도가 확립되었다. 이 제도의 확립은 지역독점을 갖고, 기술적으로는 우위에 있는 전화회사가 CATV 사업이라는 새로운 분야와 관련되어 전화사업 분야이외로부터 CATV 사업에로의 참가자와 경쟁기반을 公正化한다는 측면도 갖고 있고 그 정책은 공정한 경쟁의 확립을 노린 미국의 전통적 규제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생각될 수 있다.

이 규제는 주간 및 주내의 일부에 경쟁정책이 도입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전화회사의 영업구역내에서는 전화회사에 의한 CATV 사업의 겸영을 禁止하게 되었다. 이것은 FCC 가 1. 전주가설, 통신로 제공에 의한 차별적 취급 2. 전화회사와 CATV 자회사간의 내부보조 3. 전화회사 본래업무에 대한 영향이라는 3가지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 相互所有規制의 실시를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단 상호소유규제안이 '70년에 성립되었을 당시부터 규제의 적용 제외조항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이 조항은 개별신청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된 예가 극히 드물었다. 따라서 '76년 전국전화공동조합협회(NTCA)는 동적용제외조항에 대한 불복신청을 FCC 에 제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sup>4)</sup>

이러한 움직임은 기술의 발달(광섬유 사용)과 CATV 서비스의 다양화에서 비롯되었다.

종래에는 전화회사는 동선을, 케이블사는 동축케이블에 의해 각각 음성서비스, 교환서비스와 비디오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광섬유를 이용하게 되면 모두가 동일 전송로를 이용하므로써 비용이 절감된다. 이때의 회선용량에 대해 FCC 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光纖維는 디지털 정보를 500 Mbps 로 가정에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에서 디지털로 전달되는 HDTV 신호는 150 Mbps 의 채널 용량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나머지의 용량으로 부가정보를 전달할 수

4) 菅谷實, '米國の CATV における放送と通信の境界問題', Nikkei Communications, 1989. 5. pp. 86~88.

있다.

이러한 광섬유의 용량을 최대로 활용하고 가입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FCC는 시범적으로 CATV 가입자가 그리 많지 않은 농촌 지역에 전화회사의 CATV 사업을 허가하게 되었다.

이 후 전기통신정책의 전문가, 정부기관등에 의한 상호소유규제에 관한 흥미있는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논문들의 주장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CATV의 프랜차이즈지역에서 전화회사가 common carrier로서 CATV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인정한다. 둘째, 모든 CATV 회사에 전화 서비스 제공을 장려하고 그것을 다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사업자와 접속시켜 새로운 전국전화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 점은 지역 차원에서 2개의 유선전기통신망에 통신과 방송이라는 두 종류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에 의해 지역독점을 전제하고 있는 지역시장에 경쟁原理를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지금까지 통신과는 별도로 발전되어 온 CATV가 전기통신업자의 CATV 사업의 개시와 광섬유의 이용은 지금까지의 방송영역에서 규제를 해왔던 법 체제의 整合成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게 된다.

### Ⅲ. 放送 理念의 再構成

#### 1. 稀少性 原則의 消滅

통신혁명으로 인한 다미디어 다채널상황의 전개와 정보화사회로의 이행은 새로운 방송정책수립의 필요성을 가져오고 있다. 지금까지 방송에 대한 법적 규제가 바탕으로 하고 있는 기본사상은 그것이 '公의 서비스'이고 '公의課業'을 수행한다는 관점에서 국영도 민영도 아닌 공영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첫째, 전파 자원의 희소성 내지 채널의 부족 둘째, 방송의 경영은 막대한 자본과 경비를 필요로하며 세제, 사회적인 측면으로서 방송은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그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공영방송을 구축한 주요 이유였다.<sup>5)</sup>

그러나 공영제의 가장 중요한 근거이던 채널의 희소성이 해소된 지금 기존의 방송매체뿐만 아니라 새로이 개발된 기술상의 뉴미디어에 적합한 규제의 틀이 요구되고 있다.

일례로 지금까지 미국에서 방송에 요구하여 왔던 「공정한 원칙(fairness doctrine)」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1985년에 FCC는 국민들이 방송을 통해 다양한 견해에 접할 權利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방송사업자에게 첫째, 공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방송에서 취급할 의무 둘째, 그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해 하나의 견해를 방송한 때는 반대의견을 방송할 의무가 있는 공정한 원칙에 대해 이 원칙을 계속 존속시킴은 불필요하게 방송사업자의 보도의욕을 저하시킬 원인이 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원칙이 불필요하게 된 이유로서 바로 방송국 수의 현저한 증가와 더불어 많은 종류의 뉴미디어 등장에 따라 진전된 情報供給源의 多樣化를 들었다. 또한 1987년에는 그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원칙은 공공이익에 반할뿐 아니라 수정헌법 제1조(언론,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고 하면서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원칙을 둘러싼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하겠다.

#### 2. 放送概念의 相對化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규정되고 있는 방송의 개념—불특정다수의 수신—이 이제 더 이상 방송의 고유한 특성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기통신의 발달로 인해 대다수 공중을 상대로 정보를 송신할 수 있게 되었다. 일례로 미국에서 CATV를 위한 프로그램이 위성을 통해 전송된 정보가 개인이 허락도 없이 수신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대가 급증함에 따라 미국정부는 聯邦通信法 제6장에서 개인의 수신을 허락하게 되었다. 그 때까지는 CATV를 위한 정보의 직접수신은 해적행위라고 보았다. 즉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소위 백야드안테나로서 개인이 정보를 수신하는 것에 대해 공급자측은 海賊行爲라고 주장하

5) 박용상, 『방송법제론』, (서울: 교보문고, 1988) p. 34.

였다. 이러한 사건에서 방송사업자의 면허를 받지 않은 프로그램 공급업자가 전송한 정보를 공중이 직접 수신하게 됨으로서 프로그램 공급업자가 실질적으로 방송업자와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방송면허를 받은 방송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공존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것만으로도 古典的 放送概念은 해체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CATV 가입세대가 50%를 초과한 미국, 캐나다, 네델란드, 벨기에... 등에서는 공중파에 실어 발사된 방송신호를 수신자가 「직접수신」하는 형태가 무너져버렸다. 즉 수신계는 아직 무선의 형태이지만 수신계는 대부분이 유선의 형태로 옮겨가고 있다. 간접수신, 공동수신이 기본형이 되었다는 것이다.

수신계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는 방송개념의 재고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수신계의 유선화는 동시에 다채널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채널의 유한성, 희소성을 근거로 하고 있는 방송법제는 실질적으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 IV. 考慮되어야 할 放送制度

이상과 같이 전파, 통신기술의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기존의 방송제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 현재 기존의 방송제도에서 고려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서술하겠다.

##### 1. 表現自由의 確保

현재의 방송법제의 기본원리는 말할것도 없이 헌법의 표현자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정보를 보내는 자유로부터 받는 자의 알권리보장에 중점이 이행되고 있다. 그 주된 요인으로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을 촉진한 전파, 통신기술의 발달이라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전파, 통신기술의 발달은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촉진에 기능함이 기대된다. 한편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도 충분히 기대된다.

어쨌든 방송법제의 기본원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있

어서 필수인 표현자유와 확보, 특히 알 권리의 보장에 있는 것은 앞으로 변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전파, 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해 '보낼권리', '알권리'가 당연히 보장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2. 放送概念의 變化와 放送法制

현대사회의 특징의 하나로서 각 미디어들의 相對化를 들 수 있다. 이 점은 방송의 개념설정과도 관련이 있다. 즉, 유선과 무선의 구별, 동보통신과 방송의 구별 등 현재의 방송법제를 다른 형태의 전기통신법제로부터 구별하는 것이 과연 유의미한 것인가? 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다.

##### 3. 放送事業主體의 分離

현재의 통신, 방송에 있어서 소프트와 하드 일체의 원칙이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종전의 방송운영은 제작, 편성 및 송출 모든 사항을 방송사가 전담하는 통합적인 운영체제였다. 그러나 뉴미디어의 출현과 함께 위성이나 케이블 망의 설치에 있어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그 기술적 구성은 고도의 과학적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비하여 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성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의 측면을 보면 새로운 프로그램 수요에 따라 새로운 투자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제작에 있어서는 창의성과 전문성이, 편성에 있어서는 다양성과 선택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전의 하드부문과 소프트부문을 統合運營하던 체제는 변모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하드와 소프트의 분리라는 새로운 체제를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하드 소프트웨어 일치하에서는 프로그램 편집규칙에 의해 일관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분리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 소프트웨어의 참여를 희망하는 자가 다수이고 하드사업자의 시설제공능력이 그들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소프트웨어공급자의 참여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는가? 셋째, 시설면허를 통해 이루어져 온 매스 미디어의 집중배제 및 외국성배제를 소프트공

급업자에 대해서 어떠한 제도를 통해 확보할 것인가?<sup>6)</sup>

#### 4. 事業範圍의 問題

모든 미디어들의 機能이 重複됨에 따라 기존 방송의 고유한 사업영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첫째, 종래의 라디오 및 TV와는 다른 기능, 특징을 갖는 방송 뉴미디어가 출현하고 있다. 비록 방송이라는 범주에는 속하지만 뉴미디어가 출현한다는 것이다. 둘째, 장래 CATV가 발전하면서 방송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셋째, 종래에도 있었지만 전기통신의 하나인 동보통신의 이용형태가 다양해 짐으로서 방송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 수신자측에서 보면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정보통신서비스(예, 캡틴서비스, VRS)와 방송의 구별이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방송과 유선방송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제도를 재고하는 전제로서 放送範圍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방송프로그램 규율과 공공방송의 역할과도 연결되고 있다.

#### 5. 매스컴의 集中排除 原則

현재 CATV를 포함한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매스컴 집중배제의 원칙이 없다. 때문에 신문사나 방송사업자가 CATV 사업을 하는 것은 일단 가능하다. 단지 지금까지는 이익도 없고 그다지 커다란 영향력이 있는 매체도 없었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비록 일본에서는 신문사가 CATV의 정보공급자 역할은 하고 있지만 만약 뉴미디어의 재산성이 높아질 경우 신문과 방송업자가 참여하게 된다면 매스컴 집중배제의 원칙을 현재의 무선을 이용한 방송에만 한정시킨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 6. 프로그램 規律의 問題

현행 일본의 방송프로그램 편집에 대해 '공안 및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규칙을 정하고 있다. 이 규칙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매스컴분야에 있어서 방송에게만 적용되고 있지만 특히 전파의 희소성 및 미디어로서의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독히 방송에만 적용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특히 정치적공정 및 다각적 보도의 규칙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가 다양화, 증대화됨에 따라 많은 사업주체의 참여가 실현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원칙이 의문시된다. 즉 문자방송, 다중방송, CATV 등에 대해서는 각 매체에 적합한 프로그램 편집규칙을 재정할 필요가 있다.

### V. 先進國의 動向

#### 1. 美國

##### 가. 公正한 原則에 대한 論議

앞에서 서술한 공정한 원칙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FCC의 원칙 無用論에 대해 시민단체는 "FCC가 불충분한 증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다"라고 하면서 콜롬비아 특별구연방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고등법원은 "충분한 증거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자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함으로서 FCC의 결정을 지지하였다. 반면에 FCC의 주장가운데 「공정원칙이 위헌이다」라는 주장은 철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고등법원이 헌법에 기초한 판단을 회피한 점은 원칙의 존속 여부결정을 의회에 맡긴것이라 하겠다.

한편 의회에서는 원칙지지자가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1986년에 압도적 다수로 공정의 원칙을 통신법 제315조에 명문화하기 위한 법안을 가결하였지만 레이건의 거부권행사로 그들의 주장이 좌절되었다. 그러나 레이건과는 달리 매우 신중한 對의회자세를 갖고 있는 부시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리라 본다. 그러나 각종 미디어의 등장은 여러가지 면에서 방송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공정한 원칙의 향방이 어떻게 되는지에 귀추가 주목

6) 放送政策懇談會, "ニューメディア時代における放送に関する懇談會", 1987 p. 49.



된다.<sup>7)</sup>

### 나. 유료 TV 의 放送認定여부에 대한 論議

현재 전파를 사용하여 행하는 유료 TV 서비스를 방송으로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해 끈임없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放送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방송의 정의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이다. 만약에 放送被免許人이 아닌자가 프로그램을 통신위성을 사용하여 직접 가정에 TV 프로그램을 보내는 서비스가 방송규제의 틀밖에 위치하게 된다면 유료방송의 公益性이 배제되므로 다양한 견해에 접할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전기통신의 기본법인 「1934년 통신법」의 제3조(0)에서 방송을 “이 법률에서 말하는 방송은 공중에 의해 직접 혹은 중계국을 통하여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무선통신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특정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송신은 금지되어 왔으나 가입제 유료방식에 의한 유료라디오방송이 「방송」에 해당하는가의 여부가 최초로 문제가 된 것은 1941년의 MUZAK 사건과 1958년의 Passional 음악방송회사사건에서 부터이다. 이 사건에서 콜롬비아 특별구 연방고등법원은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송신은 가입제 유료에 있어서도 방송에 해당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송신된 프로그램의 내용이 대중에게 소구하는 것이라면 특정가입자만이 수신가능하여도 방송이라는 위치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6년 갑자기 FCC 가 유료 TV 규제를 개정하여 유료 TV 를 「비방송비디오서비스」로 규정하게 되었다. 이 원인은 콜롬비아 특별구연방고등법원이 상업방송업자의 전국적인 조직인 NAB 가 FCC 가 채택한 1982년의 「DBS 에 관한 잠정규칙」을 通信法違反이라 소송한 NAB v FCC 사건의 판결(1984)에서 잠정규칙의 대부분을 적법이라 인정하였고 유료 TV 와 관계되는 항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FCC

는 잠정 DBS 규칙의 제정에 대해 DBS 사업이 거액의 자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첫째, DBS 의 시스템의 건설과 운용은 그 시스템을 사용하여 방송사업을 하는 자에게도 커먼캐리어=공중전기통신사업을 하는 자로 인정한다. 둘째, 단 프로그램이 공중전기통신사업형 DBS 의 채널을 빌려 개개인의 가정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때는 프로그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관례를 뒤집는 것으로서 방송과 비방송을 구별하여 유료 TV 를 방송의 틀밖에 위치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FCC 는 “비가입자에 의한 수신을 저지하기 위한 송신기술이 사용되고 송신자와 수신자가 사적계약관계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1986년 11월 5일에 이것에 기초하여 위성을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전파에 의한 유료 TV 서비스를 모두 비방송의 「가입제비디오서비스」로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전국시민단체인 NAB 는 강력한 반발을 보이면서 방송을 정의하고 있는 통신법 3조의 공중이라는 말에는 그것의 범위를 한정시키는 어떠한 수식어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방송의 정의를 “공중에 의해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무선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본다”라고 하면서 사용기술과 계약관계만을 이유로 하여 유료 TV 방송을 비방송으로 구분한 FCC 의 조치는 동위원회의 자의적인 해석에 기초하므로 통신법으로부터의 일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고등법원은 FCC 의 결정에 대해 지지하는 판결을 내리게 됨으로서 이 사건은 일단락 되었지만 새로운 방송계 미디어의 출현에 따른 규제의 이점표가 되었다.

## 2. 英國

영국 내무성은 작년(1988) 11월, 1990년대에 걸쳐 방송정책의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취급한 「'90년대의 방송(“Broadcasting in the 90's : Competition, Choice and Quality )」의 제목하에 방송백서를 의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이것을 공표하였다. BBC 와 IBA 에

7) 中村皓一, “米國における「放送」の現状”, 新聞研究, 1989. 7. p. 32.

의해 유지되어온 복점(comfortable duopoly)상태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뉴미디어시대의 방송정책을 제시하였다.

1) 白書內容<sup>8)</sup>

(1) BBC 現象維持 :

BBC 는 적어도 현행 「특허장(Royal Charter)」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1996년 말까지 기본대장은 변하지 않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수신료의 인상은 인정하지만, BBC 가 운용하는 TV 2채널 가운데 1채널의 야간시간을 BBC 로부터 분리하여 민간사업자 이용에 개방함과 동시에 BBC 도 「수신료의 최종적 대체」를 염두에 두어 남은 1채널의 야간시간 등을 사용하여 유료방송서비스를 시험할 것을 장려한다.

(2) 民間放送을 管掌하는 새로운 行政機關의 設置 :

BBC 를 제외한 모든 민간방송(Independent Television)은 기존의 IBA 및 케이블 Authority 의 제업무를 이어받아 독립행정기관으로서 ITC (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관할에 둔다.

(3) 民間放送事業의 再編 및 新設 :

민간 TV 는 크게 구별하여 (1)지상계방송서비스 (2) 위성계방송서비스 (3)지역서비스로 구분된다.

우선 지상계 방송서비스 가운데 기존 ITV 각사에 대해서는 현행 편허기간이 끝나는 1993년 시점에서 경쟁입찰을 하여 채널 3이라는 명칭으로 재발족한다. 동 채널은 기존 ITV 와 똑같은 지역 서비스를 하지만 BBC 와 같이 야간방송시간을 분리하여 유료방송서비스 도입이 인정된다. 채널 3의 성립과 시기를 같이 하여, VHF 대를 사용한 새로운 전국네트워크의 채널 5를 신설한다. 동채널은 2개 이상의 시간대로 분할되어, 각 사업자에게 할당된다. 현행의 4채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업적을 평가하여 재원조달방식 및 경영형태를 변화한다.

다음에 위성방송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동결되어 있던 직접위성방송의 남은 2채널에 대해서는 조금씩 개

방함으로서 1990년초에 사업화를 실시한다. 또한 저출력 및 (Astra 위성과 같은) 중출력위성의 직접수신도 종래와 같이 인정된다. 또한 영국내에 최후로 지역서비스로서 마이크로파를 사용한 새로운 전송시스템인 MVDS (Micro-wave Video Distribution System) 의 도입을 고려함과 동시에 이것을 케이블 TV 와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신규면허를 1991년에 개시한다.

(4) 放送傳送施設의 民營企業移轉 :

지상계 방송파(UHF 파)의 송신시설에 대해서는 BBC 가 운용하고 있는 것도 포함하여 신설된 민영 전송사업회사에 단계적으로는 이전 시키고, 프로그램제 공사업과 프로그램 전송사업과의 분리를 진척시킨다.

(5) 放送傳送路의 多元化 :

방송전송로에 대해서는 경쟁시장을 창출, 그 다원적 전개를 추구한다.

(6) 獨立系 프로덕션 프로그램의 一定量送出義務 :

지상계 방송사업자 및 직접위성방송사업자는 자사가 송출하는 프로그램의 적어도 25% 를 독립계 프로덕션이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편성함을 (그러나 채널 3의 방송사업자는 자주프로그램의 제작을 의무로하지 않는다)의무화한다.

(7) 「消費者 保護規程」의 遵守와 放送基準評價會의 法制化 :

모든 민간 TV 는 첫째, 뉴스는 공평하고 정확해야 하며 둘째, 공서양속에 반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세째, 종교, 정치, 공공문제 등은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 이상 세가지의 사항은 소비자보호규정(consumer protection requirements)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성과 폭력에 관계되는 프로그램 감시기관으로서 이미 활동을 개시하고 있는 방송기준평의회(BSC : the Broadcastion Standards Council)을 법제화한다.

2) 競爭原理의 導入과 二元的 規制

이상 살펴본 바와같이 「백서」가 제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제시책이 법제화 될 경우 영국의 방송사업의 변모에 대해 알아보겠다.

8) 이 글은 新聞研究(1989. 7)의 “變容する英國の放送制度”에서 인용하였음.

첫째, 철저한 競爭市場原理가 도입됨에 따라 영국의 방송사업전체가 유통화 양상을 강하게 띠게 될 것이다. 대처정권의 방송개혁의 하나로서는 방송광고시장에 있어 ITV의 독점상태를 타파하고, 방송활동의 효율화를 촉진시킴으로서 광고요금의 감소를 도모했었다.

그 정책으로서 당초 실시한 것이 BBC 방송에 廣告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우선 民營化政策의 관점으로부터 수신료 그 자체에 부정적 태도를 취해, 프로그램 내용면에서도 BBC와 많은 알력을 일으켰던 대처정권에 있어서, BBC의 「체질변화」를 강요하는 정책으로서 유효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영국 광고시장의 침체성으로부터 보아 무리하다는 판단이 피록 위원회로부터 제기됨에 따라 이번 백서에서는 그 대신으로서 정책의 중점을 「방송과 전기통신의 결합이 점점 진행되면서 전파의 회소성이 극복된 방송서비스의 擴大를 가능케 하는 다양한 전송로를 확보한다」라는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방송시간의 분할이용 및 전송사업과 프로그램 제공사업의 분리라는 소위 하드와 소프트웨어의 분리, 새로운 지상계 전국 네트워크의 신설과 경쟁입찰제의 도입, 남은 BBC 2채널의 동결해제, BBC 이외의 위성방송의 제도적 위치의 명확화, 지역서비스용 전송로로서 MVDS의 도입등에 의해 더 나아가서는 방송광고시장에 최대한의 경쟁을 도입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까지는 BBC 및 IBA(또한 ITV 채널)쌍방에 부과한 공공서비스방송(public service broadcasting)으로서의 의무, 즉 「일반 개개인에 호소하는 프로그램 및 소수자의 이해에 관한 프로그램과 더불어 공중의 여러분야에 걸친 호기심과 관심에 부응한 질이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오락과 교육 정보, 문화적소재도 제공한다」라는 의무를 BBC만에 부과하고, 민간 TV를 그 대상외로서 하는 이원적 정책에 의해 영국방송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위치지어질 것인가를 민간사업자의 사업전략 및 조만간 설립될 법률의 운용과 관련되어 민간 TV의 商業主義化의 가속화와 그에 따른 BBC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나 특허

장의 기한이 끝나는 1996년까지는 공공서비스 방송으로서 BBC의 지위가 현상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 3. 日本

#### (1) 調和와 自由競爭을 原則으로한 放送政策

1987년 4월에 방송정책간담회보고서가 발표된 후 우정성은 기존 방송체제의 확장·정비를 주목적으로 하는 방송법개정을 1988년에 실행하는 것을 기점으로 스페이스케이블네트추진간담회, 방송의 공공성에 관한 조사연구회, 위성방송의 장래전망에 관한 연구회, 통신과 방송의 경계영역적서비스에 관한 연구회등을 차례로 조직, 운영하는 것에 의해 뉴미디어의 방송서비스도입에 초점을 둔 정책입안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과정의 근거에는 「地上系放送과의 調和」외에 「地上系放送 内部의 調和(예를 들면 NHK와 민방의 조화)」등의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민간위성의 출현에 따라 방송계는 「본격적위성이용시대」에 돌입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매우 신중하게 방송국면허를 발급해 왔지만 오늘날에는 1957년에 민간 TV의 전국적인 대량면허를 발급한 것과 같이 電波開放對策을 위성이용의 방송관련 사업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1957년의 그것은 TV 방송의 전국적인 보급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재의 전파개방정책은 그러한 지역성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기존방송과의 조화이다. 우정성은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정보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TV 방송 및 FM 라디오 방송에 대한 Channel Plan의 수정을 통해 多局化政策을 견지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격적위성이용시대에 있어 전송로의 다채널화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고, 그 결과 방송사업자와 위성이용사업자의 공존, 경쟁관계가 당분간은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우정성은 양자의 조화있는 경쟁에 대한 조치가 현안문제로 되고 있고 기존방송업자는 지금까지의 보호책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집중배제규칙과 규제완화를 둘러싼 문제이다. 지금까지는 매스미디어의 독점형태가 배제되어 왔지만 도시형

CATV, 위성을 이용한 프로그램 공급등에 다수의 기존 미디어가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양자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가 커다란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세제, 정보의 지역격차가 시정되지 않고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성을 통해 일본 전 국토에 정보가 전송된다고 하지만 아직은 대도시에 시설이 집중되고 있고 뉴미디어의 설치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고 또한 유료화에 의해 정보소비가 대도시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2) 公營放送의 位相

다채널화에 있어서 NHK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TV 방송의 총채널 수가 4 혹은 5일때, 즉 소수채널의 시대에 있어서는 NHK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가 컸기 때문에 국민들은 수익자로서 受信料를 부담하여 왔다. 그러나 지방민방의 전국적 4국화, 위성방송의 8채널화, 스페이스케이블네트의 확대, 통신위성에 의한 방송서비스의 실용화, 전기통신하부구조를 통한 영상서비스출현 등 여러 종류의 미디어가 발전됨에 따라 국민의 NHK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저하될 것이다. 더불어 수신료의 타당성도 의문시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영방송인 NHK를 상업방송화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상업방송의 시청률주의의 對應體(counter part)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NHK의 합리적인 모습이 모색되어야 겠다.<sup>9)</sup>

VI. 結 論

방송계 뉴미디어가 기존방송의 지위를 위협하면서

서로간의 역학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오고 있다. 기존 방송의 특성이 서서히 소멸되면서 지금까지의 公營制라는 개념의 재해석과 더불어 그에 부응한 방송체제가 신설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앞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다. 하드와 소프트웨어의 분리에 따른 프로그램 공급업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뉴미디어사업의 전문성, 창조성을 조성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독점체제에서 조화있는 경쟁체제로 방송제도가 이행되고 있다. 그러나 競爭體제의 도입으로 만연될 수 있는 상업주의를 지양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준을 심의하는 새로운 기구(영국의 방송 기준평의회)를 설치하여 방송의 저속화를 방지하고 있다. 방송계 뉴미디어의 출현이 여러가지 면에서 변화를 초래하지만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서 한번 짚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공영방송인 KBS의 위상에 관한 사항이다. 일본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도 公營放送이라는 명목하에 대부분의 방송국들이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의 채널이 발생됨에 따라 국민의 공영방송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受信料體제의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민간방송은 그들의 수익성을 문제로 채산성이 그리 높지 않은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투자를 기피할 수가 있다. 가까운 일본의 NHK가 장기간에 걸친 실험으로 HDTV의 육성에 기여한 경우와 같이 앞으로의 KBS는 민간방송의 視聽率主義를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새로운 미디어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박용상, 『방송법제론』(서울: 교보문고, 1988)
2. 日本民間放送連盟編, 『放送と社會』(東京: 東洋經濟新聞社, 1988)
3. 野崎茂, 『メディアの熟成』(東京: 東洋經濟新聞社, 1989)
4. 芦部信喜編, 『ニューメディア時代の放送制度像』(東京, 放送通信制度研究會, 1986)
5. Nikkei Communications, 1989. 5. No. 456.
6. 放送政策懇談會, “ニューメディア時代における放送に関する懇談會”, 1987

9) 服部孝章, “衛星利用をめぐる放送行政の課題”, 『新聞研究』, 1989. 7. pp. 30~31.